

『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8월 19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8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8월 31일

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세무과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(금고의 설치)에 의거 설치된 우리시의
금고 약정기간이 2009. 1. 1 ~ 2011. 12. 31로 만료됨에 따라
- 2012년 구미시 금고 지정을 위하여 "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
관한 조례"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금고신청 자격
 - 관련법 : 은행법 제2조, 제5조, 제8조에 의한 금융기관
- 금고선정방법 : 수의방법

○ 현재 금고지정 현황

(2011. 6. 30. 현재, 단위 : 백만원)

금 고 명	회 계 명	예 산 액	예 치 금 액
	계	1,042,061	125,225
대구은행	일 반 회 계	650,600	7,399
농 협	특별회계(12개)	237,713	89,730
”	기 금 (10개)	13,268	10,434
”	공기업 특별회계	140,480	17,662

○ 심의위원회 구성

- 인원 : 9명
 - － 시 의회 의원 2,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관련분야전문가, 관계공무원

○ 추진계획

- 기존 금고 제안서 제출(2011. 6. 30. 기준) 요청 : 8월 말
-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: 9월 10일 한
 - － 수의방법(재지정)의결 :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 시보공고, 금융기관 통보, 약정체결
 - － 경쟁방법 의결 : 금고약정 만료 3개월(2011. 10. 1)전까지 공고, 관련 금융기관 통보 및 경쟁방법으로 전환 추진

라. 참고사항

-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결

○ 본 의견제시안은

-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설치된 구미시 금고의 약정기간이 2009. 1. 1일부터 2011. 12. 31일까지 3년간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
- 지난 5월 개정된 “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 재지정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

○ 검토결과

- 당초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고 재지정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,
- 재지정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업무관리능력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또한 금고 재 지정으로 인해 타 금융기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지는 않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의견제시

※ 붙 임 : 의견서 1부

『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 의 건 서

□ 주요내용

○ 금고신청 자격

- 관련법 : 은행법 제2조, 제5조, 제8조에 의한 금융기관

○ 금고선정방법 : 수의방법

○ 심의위원회 구성

- 인원 : 9명
 - － 시 의회 의원 2,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관련분야전문가, 관계공무원

○ 추진계획

- 기존 금고 제안서 제출(2011. 6. 30. 기준) 요청 : 8월 말
-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: 9월 10일 한
 - － 수의방법(재지정)의결 :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 시보에 공고, 금융기관 통보, 약정체결
 - － 경쟁방법 의결 : 금고약정 만료 3개월(2011. 10. 1)전까지 공고, 관련 금융기관 통보 및 경쟁방법으로 전환 추진

□ 의견 사항

- 구미시 금고 재지정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정하게 추진하기 바라며, 특히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선정 시 복수로 추천받아 금고 지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